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29 폭행, 모욕
피 고 인 경광현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김○○(기소), 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국선)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4. 30. 12: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윤○○(남, 22세)에게 길을 물었는데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¹⁾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 새끼야 넌 천벌 받을거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걸어오면서 우연히 어깨가 닿은 것일 뿐이다. 또한 “넌 천벌받을 거야”라고 한 적은 있지만 “씨발 새끼야”라는 욕을 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폭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폭행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이 일어날 당시 피해자는 걸어가고 있었고, 피고인은 서 있던 상황이었다.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발이 한줄짜리 노란색 점자블록에 걸쳐져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상체 오른쪽 부분이 서로 근접하기 직전에 피해자의 왼쪽 발도 노란색 점자블록을 밟거나 거의 근접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해자의 진행 방향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부러 상체를 움직이지 않아도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1) 제2회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됨.

②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체가 피해자의 동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를 고의로 밀쳐 휘청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때리기 위해 어깨를 휘두르는 모습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동작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또는 팔이 피고인의 몸과 접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이전에 발생한 동작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결국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로 취한 동작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폭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모욕에 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모욕의 공소사실이나 그 위법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너 천벌 받을 거야”라고 한 뒤 잠시 후 “씨발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였고, 욕설의 소리는 자신이 똑똑히 들을 정도로 컸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은 연행되어 가면서 ‘시발’같은 말로 혼잣말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다.

② 피고인이 제출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천벌 받을 거야”라고 하는 말은 들리나, 이후 “시발 새끼야”라는 욕설은 들리지 않는 점, 피고인과 경찰관들의 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구간이 3초 정도 있으나 위 시간 동안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향해 항의를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천벌 받을 거야’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위 폭행혐의로 인한 연행 등의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었던 점 등의 제반사정과 위 발언의 의미를 종합하면, 위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종건 _____